

# 2025년 국제무역사 개정사항

(전면개정 초판 1쇄. 2024. 07. 15)



무꿈사 아카데미



## 2025년 국제무역사 개정사항 (전면개정 초판 1쇄. 2024.7.15.)

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은 주기적으로 개정이 됩니다. 시험 전 최신법령을 누락하지 않도록 무꿈사가 가장 빠르게 개정사항을 전달합니다.

### 1.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 예외 예시 수정 (46페이지)

수정 전	수정 후
1. 약식표기 대상 ⑤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,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,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(예 : 비누 · 칫솔 · VIDEO TAPE 등)	1. 약식표기 대상 ⑤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,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,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(예 : 비누, 칫솔, <b>밀봉된 의약품</b> 등)

### 2. 지식재산권의 범위 추가 (104페이지)

수정 전	수정 후
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상표권 ② 저작권등 (저작권과 저작인접권) ③ 품종보호권 ④ 지리적표시권등 (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) ⑤ 특허권 ⑥ 디자인권	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상표권 ② 저작권등 (저작권과 저작인접권) ③ 품종보호권 ④ 지리적표시권등 (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) ⑤ 특허권 ⑥ 디자인권 ⑦ <b>방위산업기술</b>

### 3.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 상향 (149페이지)

수정 전	수정 후
신고납부 원칙에 의거하여 부족세액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 또는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부족세액의 10%와 미납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가산세를 징수한다. 부정한 행위에 의해 과소신고한 것일 경우에는 40%를 가산세로 징수한다. 정정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으며, 보정신청의	신고납부 원칙에 의거하여 부족세액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 또는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부족세액의 10%와 미납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가산세를 징수한다. 부정한 행위에 의해 과소신고한 것일 경우에는 <b>60%</b> 를 가산세로 징수한다. 정정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으며, 보정신청의

경우 가산세는 없지만 지연기간에 대한 가산이자는 부담하여야 한다.	경우 가산세는 없지만 지연기간에 대한 가산이자는 부담하여야 한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※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상향조정과 함께 무신고 가산세도 기존(원칙 20%, 밀수출입죄에 해당하는 경우 40%)에서, 원칙은 동일하지만 밀수출입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60%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.

#### 4. 제척기간 7년 사유 추가 (155페이지)

수정 전	수정 후
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. 다만,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.	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. <u>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에는 7년</u> ,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.

#### 5. 위약물품환급 반입장소 추가 (159페이지)

추가학습 : 위약물품 환급 반입장소
위약물품의 반입장소는 정확하게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, 2025년 1월 <u>통관우체국</u> 이 추가 되었다.

#### 6. FTA특례법 필리핀 추가 (196페이지 및 197페이지)

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	12개월
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	원칙 : 기관발급 예외 : 자율발급 (인증수출자 취득시)

#### 7. FTA특례법 RCEP 자율발급 추가 (196페이지)

추가학습 : RCEP 자율발급
2025년 1월부터 <u>한국·일본·호주·뉴질랜드</u> 간에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원산지증명서의 자율발급이 인정된다.

-끝-